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

일 시 : 1978. 8. 28 16:00

장 소 : 건설부 대회의실

참 석 : 건설부 : 주택도시국장 김 창 곤

건축 과장 김 영 철

행정 계장 윤 향 노

본 회 : 회 장 강봉진

총무이 사 김두섭

이 사 박우하, 유경철, 한영수, 장중을

감 사 양상규

이날 회의에 앞서 주택국장으로 부터 지난 25일 ○호텔에서 있었던 사법시행령개정에 따른(국회건설위원회)소위원회 위원 5명중 3명이 참석한 조찬회의에서의 결론으로 사후신고로된 설계도서의 신고는 사전신고로하되 사전심사를 해서 설계도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과 출석치 못한 두위원에 대한 동의도 김녹영위원이 양해를 얻겠다는 제의가 있었다는 경유설명을 본협 참석자들에게 한후 설계도서의 신고가 사전 심사제도로 될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첫째, 연간 약 250,000건의 이르는 방대한량의 설계도서를 심사할때 그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등으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회원의 부담이 가중될것이다.

둘째, 합동사무소에서만이 할수있는 설계도서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합동사무소의 품위도 높이기위해 설계도서의 심사를 제외하고 그외의 도서만을 심사하는 방안.

셋째, 심사의 기준의 설정방안

위와같은 건설부측이 제시한 제반 문제점이나 그해결방안에 대한 본협 의견으로서.

첫째, 서울지부에서 약 3년간 도서의 질적향상을 위해 자율적인 도서심사를 실시한 결과 도서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허가관서에서도 도서가 일단 협회에서 세밀하게 심사 되었으므로 큰부담을 갖지 않고서도 허가 처리가 될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의 량이 많으므로 인해 심사가 끝나기까지는 1일 내지 2일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회원의 불평이 있고 또한 도서심사를 뒷받침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그후 중단되었다.

그런점으로 미루어 설계도서의 심사는 설계도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절대 필요하며 위법불실설제도 근절되고 건축허가 행정도 명랑화 될것이다. 심사에 따른 예산문제도 다소는 과중되기는 할것이나 효과에 비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도서심사를 할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도서심사를 할 경우

현재 하등의 법적인 근거없이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각구청에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심사가 폐지 되어야 하고 뚜렷한 심사기준이 없이 실시되고 있는 미관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를 해야 할것이다.

셋째, 전체 설계도서에 대한 심사는 물량으로보아 일정건물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것이며, 일정규모는 주택과 그외의 건물로 구분을 생각 할수도 있는데, 위법 건축은 오히려 규모가 큰 건물보다 주택의 경우 심하다.

위와같은 의견교환후 전체회원들의 관심사이던 설계도서의 사전 또는 사후 신고에 대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서심사를 조건부로 하는 사전신고 문제를 도서심사 방안과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하므로써 우려했던 설계도서의 신고문제는 전체회원의 여망대로 사전신고제가 채택될 전망이다.

이자리에서 본회 임원들은 차제의 2급 건축사의 대하여도 오랫동안 실무에 종사하였고 건축사자격시험 문제중 3 과목은 가히 응시한 것이므로 과목면재를해서 구제되어야 마땅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건설부 의견을 피력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건설부측은 2급 건축사는 법개정으로 업무량이 1,500m²는 상향되는 혜택을 이미 주었고, 3 과목을 응시하였다고는 하나 시험의질이 각각 다르므로 응시과목이라도 면재할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다만 2급 건축사는 오랫동안 실무에 종사 하였으므로 설계를 잘할것이므로 설계시험의 점수를 200점으로 하고 기타과목을 100점으로 하여 설계비중을 높이므로써 2급건축사에게 유리하도록 했다고 답변하였으며 협회 임원들은 시험과목의 질이 다르다고는 허나 시험문제가 유사하므로 일부과목의 면제가 고려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 반영이 되도록 요청하였다.

이상으로서 간담을 마추었다. 소요시간 3시간